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2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20일

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
(안 제18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19조의4)

※ 과태료 조례 폐지

- 「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」
- 「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」
-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수수료 기준 변경 (안 제6조제6항)
- 일 50ℓ 이하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 (안 제13조제2항)
-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매립용 마대 제작 (안 제14조 제1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의 2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0조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
- 환경부 「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관련 과태료 조례를 일원화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
- 과태료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
- 5톤 미만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수수료 기준 변경

- 일 50ℓ 이하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게 하고,
-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매립용 마대 제작, 일반용 봉투 무료공급 기준변경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용어 변경, 그리고 조문 순서 변경 등으로 전부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